문서번호	감사담당관-6014
결재일자	2015.4.2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성북구 인권센터장	감사담당관	부구청장
왕주미	김정아	이경환	04/23 김병환
협 조 자			



- 2015.4.29. 재보궐선거 -**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**

2015. 4.

감사담당관 (인 권 센 터)

- 2015.4.29. 재보궐선거 -

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

2015.4.29.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에 주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

I 추진배경

-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권증진 기본조례 제24조제1항5호
- 2015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업무체계 추진계획서 특별정책과제 -

Ⅲ 선거개요

톨 표: 2015.4.29.(수) 06:00~20:00

※ 사전투표소 투표 : 4.24(금)~4.25(토) 06:00~18:00

선거구 : 성북구아선거구 구의원(장위3동, 석관동)

투표소 : 12개소(장위3동 : 4개소, 석관동 :8개소)

※ 사전투표소 : 2개소

선거대상 : 구의원 1명(1개 선거구)

🔲 유권자수

인 구 수 (재외국민/외국인)	세 대 수 (재외국민 / 외국인)	19세이상 주민수 (재외국민 / 외국인)	비고
53,433	22,810	45,516	
(100/56)	(100/56)	(95/56)	

Ⅲ 선거사무 및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

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 결과

● 일 시: 2015. 4. 20까지

● 평가자 및 방법: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표에 의거 동별 선거사무담당 공무원이 자체 점검

● 평가결과

평가항목	평가내용	평가결과	비고
권리침해	- 사전투표 안내 충실 여부 - 선거사무 관련 정보인권 침해 여부 - 사회적 소수자 고려 여부 등	적정	
구제수단	- 참정권 침해 시 구제수단 존재 여부 - 구제수단의 적절한 작동 여부	적정	
주민참여	- 투·개표 사무원, 참관인 등 위촉시 주민 참여 가능 여부 - 투표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 여부	걱정	
안전	- 투·개표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 여부 - 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 방안 마련 여부	걱정	
기타	- 투·개표 사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실시 여부	걱정	
	- 투·개표소 사무원의 근무환경, 근로시간 등이 인권을 고려하였는지 여부	부적정	장기적 대책 마련 필요

🔲 투표소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

● 일시: 2015.4.15.~4.17

● 평가자 : 인권센터 직원 4명

● 방법 :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 의거 현장 실사

● 점검 장소 : 2층 이상의 장소이면서 승강기 미설치 건물 및 지하 층에 소재한 투표소를 위주로 집중 실사

■ 집중 점검 투표소 평가 결과

● 사전 투표소(1개소/총2개소)

투표소명	건물명(충수)	충수	장소 유형	건물입구 경사로	승강기 유무	이동기표소 필요여부	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장소	
장위제3동 사전투표소	서울특별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(로비)	4층	공공기관· 단체사무소	0	0	×		

투표소(7개소/총12개소)

투표소명	건물명(충수)	충수	장소 유형	건물입구 경사로	승강기 유무	이동기표소 필요여부	이동기표소 설치 예정 장소	
장위3동 제1투표소	장위3동주민센터	3층	관공서	0	×	0	1층	3층 이동
장위3동 제2투표소	삼익아파트 주차장	지하1층	기타	0	0	×		
장위3동 제3투표소	서울특별시립성북 청소년 수련관(별님반)	1층	공공기관· 단체사무소	0	0	×		
석관동 제1투표소	석관동주민센터 (회의실)	2층	관공서	0	×	0	1층	1층에
석관동 제2투표소	석관동주민센터 (강의실)	3층	관공서	0	×	0	1층	1층에
석관동 제3투표소	상진운수 (교양실)	2층	기타	×	×	0	옆 건물 1층	경사로 접 안내
석관동 제7투표소	래미안석관아파트 (입주자대표회의실)	2층	기타	0	×	0	1층	1층(

🔲 평가결과 의견

- 지상 1층외 E/V가 미설치된 곳(5개소)은 이동기표소와 안내요원(2명 이상)을 배치하고 시각장애인 기표용구 등을 비치하여 거동 불편자의 접근이용이하도록 대비가 필요함
-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투표 장소 마련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나, 상진운수(석관동 3투표소)의 경우, 출입구 계단 경사가 비교적 심하나,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, 이동기표소 및 안내요원이 배치된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요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투표 당일 충분한 안내(이동기표소 설치 안내문 부착)가 필요함
- 장위3동(투표소 1개소) 및 석관동 주민센터(투표소 2개소)의 경우 투표 당일 일반 민원업무(1층)와 함께 2층과 3층에서 투표 업무를 실시하고, 거동불편자 등을 위한 이동기표소를 1층에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바, 극 도의 혼잡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및 참정권 보장을 위한 충분 한 홍보(이동기표소 설치 안내문 부착)가 필요함
- 투표 당일 장시간 민원업무와 선거사무를 수행해야하는 동주민센터 직원 및 **투표사무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**. 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

현 장 사 진

장위3동 2투표소(삼익아파트)



지하주자창에 마련된 투표소 예정장소, 환경권과 안전권의 침해가 우려된다.

석관동 3투표소(상진운수)



투표소 입구 계단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휠체어 및 거동불편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.

석관동 7투표소(석관래미안)



건물입구에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투표소이다. 이동기표소 및 안내요원의 배치가 필요하다

\mathbf{IV}

향후 계획

- 🔼 관련부서에 1차 송부하고, 인권위원회 및 구의회 제출
- 위원회 심의 결과 권고 결정시 관련 부서에 전달 및 결정사항 이행여부 모니터링
- 실시결과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해외 사례 연구 및 평가 지표 수정 예정

<u>2015.4.29</u>. 재 · 보궐 선거 투표소 현황

■ 사전 투표소 현황(2개소)

투표소명	건물명(층수)	투표소 주소	면적 (m²)	장소 유형	승강기 유무	비고
장위제3동 사전투표소	서울특별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(4층, 로비)	한천로95길 7	75	공공기관· 단체사무소	0 <u>Г</u>	
석관동 사전투표소	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커뮤니티센터(1층)	화랑로 210-26	72	기타	_	

■ 투표소 현황(12개소)

투표소명	건물명(충수)	투표소 주소	면적 (m²)	장소 유형	승강기 유무	비고
장위3동 제1투표소	장위3동주민센터(3층)	한천로 657	91	관공서	무	
장위3동 제2투표소	삼익아파트 주차장 (지하1층)	화랑로37길 42	91	기타	о г	
장위3동 제3투표소	서울특별시립성북청소년 수련관(1층,별님반)	한천로95길 7	42	공공기관· 단체사무소	_	
장위3동 제4투표소	참누리아파트205동 (1층,체력단련실)	한천로101길 18	67	기타	_	
석관동 제1투표소	석관동주민센터 (2층, 회의실)	화랑로 296	120	관공서	뮈	
석관동 제2투표소	석관동주민센터 (3층, 강의실)	화랑로 296	68	관공서	무	
석관동 제3투표소	상진운수 (2층, 교양실)	한천로76가길 2	88	기타	무	
석관동 제4투표소	코오롱아파트 (1층, 경로당)	한천로 509	48	경로당 등 복지회관	_	
석관동 제5투표소	석관두산아파트 (1층, 경로당)	화랑로48길 16	65	경로당 등 복지회관	_	
석관동 제6투표소	석관실버복지센터 (1층)	화랑로32길 88	72	경로당 등 복지회관	_	
석관동 제7투표소	래미안석관아파트 (2층,입주자대표회의실)	화랑로 214	55	기타	무	
석관동 제8투표소	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커뮤니티센터(1층)	화랑로 210-26	72	기타	_	

2015.4.29 재보궐선거 선거사무 인권영향평가표

()동 위원회

구 분		평 가 항 목	평가결과	비고
	1.	투표 당일 투표가 불가능한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사전투표 안내는 충분히 홍보되었는가 ?	홍 보 미홍보	
	2.	선거사무 추진으로 인해 유권자의 정보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는지 ?	음 없 음 다 다	
권리침해	3.	선거벽보 첩부시 주민의 정보취득 권리를 박탈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한 장소인가 ?	☐ 검 토☐ 미검토	
[건니즘(M	4.	선거사무 추진시 장애인, 여성,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를 충분히 고려한 방안은 검토되었는가 ?	☐ 검 토☐ 미검토	
	5.	선거공보, 투표안내문, 거소투표신고안내문 등 발송시 대 상자가 제외되어 참정권을 침해당할 소지는 없는지 ?	□ 없 음□ 있	
	6.	선거사무 추진시 인권을 고려한 사무를 진행하는지를 확 인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되었는가 ?	□ 확 보□ 미확보	
구제수단	1.	주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할 경우 구제수단이 있는가 ?	음 음	
T	2.	구제수단이 거주민의 권리침해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가 ?	□ 적 정□ 부적정	
スロおん	1.	투·개표사무원, 참관인 등 위촉시 주민참여가 자유로운가 ?	□ 적 정□ 부적정	
주민참여	2.	주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투표참여율 제고방안 마련되 었는가 ?	□ 확 보□ 미확보	
안 전	1.	투·개표소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?	□ 수 립□ 미수립	
	2.	투·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한 방안은 마련되었는가 ?	□ 수 립□ 미수립	
71 61	1.	선거사무 교육시 투·개표사무원에게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는가 ?	□ 실 시 □ 미실시	
기 타	2.	투·개표소의 근무환경, 근로시간 등이 투·개표사무원, 참 관인 등에 대한 인권을 고려하였는가 ?	□ 적 정□ 부적정	

201513	1의	01
2015년	4절	\geq

점검자: 소속) 직) 성명) (인) 확인자: 소속) 직) 성명) (인)

2015.4.29 재보궐선거 투표소 인권영향평가표

)동 ()투표소 マ 평 가 항 목 분 평 가 결 과 건물명 투표소 현황 투표소 위치 지하 층, 지상 층 주변 100m이내 진입 경사로 □설 치 설치 여부 □ 미설치 휠체어가 지나갈 수 주변 100m이내 경사로 너비 cm 있는 정도 확인 보도 턱(주변 100m이내) ᄀ 존 재 휠체어가 넘어갈 수 투표소 주변 존재여부 ᄀ 부존재 있는 정도 확인 ᄀ설 치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여부] 미설치 휠체어가 지나갈 수 투표소 입구 경사로 너비 cm 있는 정도 확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출입문 너비 cm 있는 정도 확인 휠체어가 지나갈 수 이동 통로 너비 cm 있는 정도 확인 기설 치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여부 ᄀ 미설치 투표소 건물내 장애인 전용화장실 설치위치 층 장애인 전용화장실 접근성 □ 용이함 휠체어가 지나갈 수 용이 여부 있는 정도 확인 □ 어려움 시각장애인용 기표용구 비치 □ 비 치 여부 장애인 및 노인 등 거동 ☐ 배 치 불편자 안내요원 배치 여부 □ 미배치 □ 설 치 승강기 설치여부 🗌 미설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이동기표소(투표함) 준비 □ 준 비 승강기 미설치 건물 위한 확인 사항 □ 미준비 이동기표소(투표함) 설치예정 층 장소 외국어 투표 진행 안내문 기게 시 다문화 가정 지원 게시 여부 기타사항

- 7 -

직)

직)

점검자 : 소속)

확인자 : 소속)

2015년 4월

성명)

성명)

일

(인)

(인)